

롯데케미칼주식회사 이사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롯데케미칼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장 구성 및 권한

제 3 조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4 조(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제 9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- ② (삭제)
- ③ 이사회 의장에게 유고·출장·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결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-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(회의)

이사회는 3 개월에 1 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유고·출장·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4 조 제 3 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 소집 시 회의일을 정하고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9 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
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,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 및 제 415 조의 2 제 3 항(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승인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며, 정관 또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

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 및 의결권이 없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그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(상정절차)

- ①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위임전결규칙에 따른 결재를 받아 안건을 작성하여 이사회일 1 주전까지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은 전항의 의안을 심사한 후 상정여부를 대표이사에게 품의한다.

제 11 조(의안설명)

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안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2 조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주주총회 상정에 관한 사항
 - (1) 주주총회의 소집
 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(3) 재무제표의 승인(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)
 - (4) 정관의 변경
 - (5) 자본의 감소
 - (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 - (7) 주식의 소각
 - 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
 - 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 - (10)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
 - (11) 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(12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 - (13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
- (14) 현금·주식·현물배당 결정
- (15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6) 이사의 보수
- (17) 상법 제 542 조의 9 제 3 항 내지 제 5 항에 따른 회사의 최대주주
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
에의 보고
- (18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(19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
- (20) 기타 주주총회에 상정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연간경영계획, 연간안전보건계획, 장기사업계획, 회사의 기본정책
- (2)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
- (3) 계열사와의 거래 중 관련법이 정하는 사항
- (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5) 공동대표이사의 결정
- (6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8) 이사회규정, 감사위원회 규정,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, 투명경영위원회
규정, 보상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
- (9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
- (10) 국내외에 자회사(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%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
경우를 의미한다), 지점, 공장, 출장소, 사무소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- (11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(12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공고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(삭제)
- (2) 1 건당 자기자본의 1% 또는 1,000 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
출자지분의 처분
- (3) 1 건당 자산총액의 1% 또는 500 억원 이상의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
- (4) 1 건당 자기자본의 2% 또는 1,000 억원 이상의 차입 및 연간 차입 한도
- (5) 1 건당 자산총액의 1% 또는 500 억원 이상의 담보제공, 채무보증, 채무인수, 면제,
증여

- (6) 수권자본 범위 내에서의 신주발행
- (7)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 및 관련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
- (8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(9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10) 전환사채의 발행
- (11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2)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에 관한 사항
- (13) 자기주식의 소각
- (14) 자사주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
- (15) 기부 협약 1 건당 당사가 부담하는 기부금의 총액이 10 억원 이상인 기부행위
- (16) 중간배당의 실시

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- (1) 상법 제 398 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(2) 이사의 경업,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회사 임원 겸임
- (3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
5. 기타

- (1) 중요한 소송에 관한 사항
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3)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
- (4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- 3. 임원의 승진, 미등기 임원의 선임, 해임에 관한 사항
- 4. ①항 이외의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13 조(이사회 내 위원회)

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- 1. 감사위원회

2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 3. 투명경영위원회
 4. 보상위원회
 5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,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⑤ 제 3 항에도 불구하고,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- ⑥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.

제 14 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.

제 15 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회의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6 조(위임)

이사회는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제 13 조 제 2 항 각 호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및 위원회, 경영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7 조(전문가의 조력)

이사회 또는 (사외)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금융, 회계, 법률, 기타 분야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제 18 조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
- ②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부 칙(2008.3.3)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3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6.24)

이 규정은 2009 년 6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3.18)

이 규정은 2011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3.4)

이 규정은 2013 년 3 월 4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3.3)

이 규정은 2016 년 3 월 3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11.8)

이 규정은 2016 년 11 월 8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6.27)

이 규정은 2017 년 6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12.19)

이 규정은 2019 년 12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4.23)

이 규정은 2020 년 04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11.26)

이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03.03)

이 규정은 2021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.